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4. 1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기간 : 2020. 4. 14. ~ 2020. 5. 01.

2. 의견제출 : 2020. 5. 02. ~ 2020. 5. 11.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나. 대 상 자	17나08**,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곡*길 **-, 김*수 외 4,988건		
다. 처분의원인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위반		
라. 법 적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마.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지도과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 3153-9659, FAX : 3153-9699)	

4.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1. 대상자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